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 저작권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프로그램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사본, 법원 결정문 등) 4.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5.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6.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공동권리자 중 일부의 지분 양도 시 공동권리자 전원의 동의서, 출판권 양도 시 복제권자의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8.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수료(1건)	
		신청물 10건까지	
		방문·우편: 70,000원 인 터 넷: 6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건당: 15,000원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없음(매년 10건으로 한정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24,000원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프로그램 권리변동 등의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